

■ 최신 법령 ■

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

1. 주요 내용

- 가. '경력단절여성등'의 정의에 경력단절 사유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주요 사유인 혼인이 추가되었습니다(제2조 제1호)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경력단절여성등"이란 혼인·임신·출산·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.

- 나.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수행하기 위해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에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(제13조).
- 다.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·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(제13조의2).
- 라.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및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(제13조의3).

2. 다운로드 : [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령\(2017. 9. 22. 시행\)](#)